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514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14071	최혁진·김동아의원	2025. 11. 10.	제433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26. 3. 3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
2214949	이헌승의원	2025. 12. 5.	
2215316	민병덕의원	2025. 12. 17.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4. 1.)는 위 3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4. 2.)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3. 대안의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단서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9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77조제1항제6호 중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80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감독”을 “감독 등”으로 한다.

제81조 제목 중 “권한의 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중소기업부장관은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2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
다.

제8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8조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리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한 총리령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고
시·행정처분, 그 밖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장의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위 또는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생략)

제23조(정관)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 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보건·의료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

----- 중소벤처기업부령-----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중소벤처기업부령-----

-----.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 9. (생략)
-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 10.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② -----
----- 중소벤처기업부령-----
-----.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② -----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
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
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
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
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
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
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
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
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

<p>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도지사”는 “<u>공정거래위원회</u>”로, “제21조”는 “제72조”로 본다.</p>	<p>-----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으로----- -----.</p>
<p>제88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정거래위원회</u>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p>	<p>제8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p>